

# 순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규정

제정 2013. 6. 12.

개정 2018. 4. 16.

개정 2018. 10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효율적 추진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학생부종합전형”이란 대학이 건학 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성적, 교육과정 및 환경, 소질, 인성, 창의성,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② “입학사정관”이란 다양한 전형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능력, 잠재력, 소질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 및 육성하는 대학 입학 전형 전문가로서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입학사정관의 구분)** ① “전임입학사정관”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평가와 입학 전형 연구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수입학사정관, 전환입학사정관, 채용입학사정관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1. “교수입학사정관”이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
2. “전환입학사정관”이란 이 대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
3. “채용입학사정관”이란 이 대학교 교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

② “위촉입학사정관”이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모집단위별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을 말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**제4조(입학사정관의 임용과 위촉)** 전임교원을 제외한 입학사정관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계약에 따른 입학사정관은 공개채용 외에 경력과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학본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4. 16., 2018.10.29.)

**제5조(입학사정관의 직무)**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개발(개정 2018. 4. 16.)

2.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에 근거한 학생의 선발(개정 2018. 4. 16.)

3. 학생부종합전형 홍보 및 상담(개정 2018. 4. 16.)

4. 입학전형의 전형결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

5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(개정 2018. 4. 16.)

6.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학생의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(개정 2018. 4. 16.)

7. 고등학교와 대학간 연계에 관한 업무

8. 그 밖의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업무(개정 2018. 4. 16.)

**제6조(입학사정관의 처우 등)** ① 교수입학사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, 이 대학교 학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, 이 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 업적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 채용입학사정관의 처우와 복무 등은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.

③ 계약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입학사정관에게는 입학전형 업무에 참여하는 기간과 업무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입학사정관 교육과 훈련)** ① 총장은 입학사정관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업무와 관련하여 교내·외의 교육과 훈련 등에 충실하게 임해야 하며, 입학사정관의 교육·훈련 이수 기준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 4. 16.)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18. 4. 16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입학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되며, 위원은 전임교원과 교직원, 입학사정관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4. 16., 2018.10.29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(개정 2018. 4. 16.)
2. 학생부종합전형 계획 수립 및 전형요소 개발 (개정 2018. 4. 16.)
3. 학생부종합전형 사정원칙 및 평가기준 (개정 2018. 4. 16.)
4.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의 관련 사항 (개정 2018. 4. 16.)
5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(개정 2018. 4. 16.)
6. 그 밖에 학생부종합전형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(개정 2018. 4. 16.)

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(개정 2018. 4. 16.)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입학지원실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(개정 2018.10.29.)

**제9조(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)** ①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사람의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-다단계 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② 평가 결과, 평가자 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③ 입학사정관의 자녀 또는 친·인척 등이 이 대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 또는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학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입학사정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해당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④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증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검증기준 및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 4. 16.)

1. 유사도검색 결과에 대한 검증기준은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2. 일정 기준 이상의 유사도를 보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평가, 면접, 현장실사, 소명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3. 매 학년도 입학전형 종료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사도 검증기준을 초과한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 재검증을 실시하고, 표절·대필·허위 기재 등이 발견된 때에는 입학 이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이의신청처리)** ①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이의신청은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, 별지 제1호 서식의 “학생부종합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② 입학 담당부서에서는 접수된 이의사항을 7일 이내에 처리하되, 이의 신청 내용이 복잡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.

③ 입학 담당부서에서는 수험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부종합전형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 전화, 홈페이지, 신청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**제11조(윤리서약)** ① 입학사정관은 별표 1의 “순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”의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,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“입학사정관 퇴직 서약서”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학생부종합전형에 참여하는 모든 평가위원은 매 학년도 평가 시작 전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“서약서”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 4. 16.)

**제12조(비밀유지)**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통해 취득한 입학 관련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기타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3. 6. 12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 4. 1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8.10.2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(개정 2018. 4. 16.)

## 순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

순천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잠재능력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선진형 대학 입학전형제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.

우리는 순천대학교 교육 이념인 진리·창조의 정신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,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교육 주체와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 규정 및 행동 규범, 준수 의무를 제정, 시행한다.

### I. 윤리 규정

#### 1. 일반 윤리

- (1)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선발 철학과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입학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.
- (2) 입학전형에서의 자율적인 평가권, 선발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한다.
- (3) 직무연수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부단한 자기 계발 노력을 기울여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
#### 2. 입학전형 직무와 관련한 윤리

- (1)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하는 **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** 및 **학생부종합전형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**과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다.
- (2) 순천대학교 입학정책의 기본사항과 그 구체적인 내용 등 학생 선발과 관련한 다양한 입학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학생 선발의 목적에 맞는 타당한 학생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한다.
- (3) 학생의 특성, 대학 및 모집전형 관련 적합성,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 선발의 교육적 타당성을 추구한다.

## II. 행동 규범

### 1. 일반 규범

- (1) 입학과 관련한 특정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,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.
- (2) 직무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(3) 업무 수행 및 입학전형 과정에서 얻은 지원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와 전형 자료의 내용은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.

### 2. 입학전형 직무와 관련한 규범

- (1) 지원자의 성별, 종교, 지역, 출신학교, 사회경제적 지위, 인종,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아니하며, 또한 이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.
- (2) 학부모와 학생, 그리고 대학 입학 이해 당사자들이 누구나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, 선발 기준을 수립 시행한다.
- (3) 지원자 및 지원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으며,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, 이를 대학에 알리고 대학입학전형에 참여하지 않는다.
- (4) 전형절차의 공정성 원칙 준수와 선발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전형결과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- (5)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순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운영 규정 등을 준수한다.

## III. 준수 의무

- (1) 입학사정관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,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.
- (2) 입학사정관은 매년 1회 이상 윤리강령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



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서약서

본인은 20○○학년도 순천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○○위원으로 위촉되어 ○○전형 (○○위원회)에 참여하게 된 바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1. 기밀 유지

신입생 선발과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, 공유하거나 유출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.

### 2.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

학생 선발과정에서 평가(또는 심의)를 위하여 정해진 사정원칙과 평가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.

### 3. 금품 등의 수수 금지

지원자나 학부모, 고교 교사 및 기타 중등 교육 관계자로부터 학생 선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 일체를 수수하지 않는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소 속 :

(외부인은 생년월일)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순천대학교 총장 귀하

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입학사정관 퇴직 서약서

본인은 순천대학교 입학사정관직에서 퇴직하는 바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1. 사교육 취업 제한

퇴직 이후 3년 동안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(제1호)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않으며,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않는다.

### 2. 개인정보 보호

학생 선발과정에서 취득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퇴직 이후에도 적극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
### 3. 기밀 유지

퇴직 이후에도 전형 등에 관한 정보 보안을 유지하며, 관련 정보를 영리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### 4. 정보/자산 반납·파기

근무기간 중 취득하거나 사용한 정보 또는 자산은 모두 퇴직 시 반납·파기한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생년월일 :

성     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순천대학교 총장 귀하